

자금신청 세부절차



- 당해연도 사업 지원 공고
-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 지원공고 * 전년도 4분기 포함





• 공단 홈페이지(인터넷)를 통하여 신청

※ 온라인신청 시 공동인증서 필요 ※ 신청 홈페이지: https://finance.energy.or.kr→ 전자민원 → 신산업 금융지원 신청



• 서류검토 후 자금지원대상 부적격 시 반려 처리 또는 서류보완 필요시 보완요청



• 서류검토 완료 후 신청사업에 대해 자금 추천위원회에서 심사



• 심사·평가 결과에 따른 추천결과 통보



기성발생/대출심사

• 자금추천 받은 자는 해당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자금추천 설비 설치 기성에 따른 대출신청



- 단, 금융기관의 심사결과 대출승인 받은 후 자금대출가능



• 은행은 대출 승인된 자금신청건에 대해 공단에 대여신청



• 공단은 검토 후 대여실행



• 금융기관은 공단으로부터 자금을 대여받아 자금신청자에게 대출실행.



• 자금인출이 완료된 사업을 대상으로 현장확인 등 사후관리 실시



사업 문의처

₾ 대출취급 금융기관

10개 시중은행

NH농협은행 국민은행 광주은행 중소기업은행

대구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전북은행

경남은행 부산은행

命 융자대상기관

• 한국에너지공단 자금융자실 052-920-0494

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23(우정동 528-1) 홈페이지(https://finance.energy.or.kr)





https://finance.energy.or.kr

2024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 안내

















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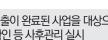














●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이란?

- 에너지신산업 분야의 초기 투자비 경감 및 투자 육성을 위하여 신산업 분야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에 대하여 장기 저리의 금융 지원 추진
- * 신산업 분야: ESS, 제로에너지빌딩, 발전소 온배수열 활용 시업, 수요자원거래, 소규모 전력중개 사업, 에너지슈퍼스테이션, 전기차 충전서비스, 에너지신기술 또 는 ICT를 활용한 에너지 신산업

● 관련규정

- 전기사업법 제49조(기금의 사용) 제2호, 제4호, 제10호
-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 운영지침(산업부 공고)

사업절차



◯ 지원대상 및 조건

● 지원대상

- ESS, 수요자원거래, 제로에너지빌딩 등 에너지신산업을 추진 하는 중소기업, 중견기업, 대기업, 비영리법인 및 공공기관

지원사업	지원대상사업 세부내역
기타에너지 신산업 (ESS 등)	아래 사업에 대한 보급 확대를 위한 기반 구축 및 필요시설의 설치 등 추진사업 및 이에 수반하는 운전자금 · ESS(전력저장장치) · 제로에너지빌딩 · 발전소 온배수열 활용사업 · 수요자원거래 · 소규모 전력중개 사업 · 에너지슈퍼스테이션 · 전기차 충전서비스 · 에너지신기술 또는 ICT를 활용한 에너지신산업

- 《 시설자금은 해당시설 및 부대설비의 구입비, 설치공사비, 설계·감리비(기술도입비 포함), 시운전비 등을 포함(단, 부가가차세, 토지 구입비 및 해당시설 설치에 필수적인
- 평균매출액을 기준으로 6개월분의 금액 범위 내에서 지원

● 지원조건

사업명	예산	사업장당 지원한도	대출기간 (시설자금)	이자율	지원비율
기타 에너지 신산업	50억원	30억원	2년거치 4년분할상환 또는 3년거치 7년분할상환 중 택1(시설자금)	분기별 변동금리	(시설자금) 사업비의 80% 이내(단, 중견기업 60% 이내, 대기업 40% 이내)

- ※ 금리는 「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운용요령」에 따른 변동금리 ※ 운전자금의 대출기간은 2년 거치 4년 분할상환으로 한다.

/+ 자금 신청시 유의사항

- ■자금신청 최소 신청금액은 1억원이며, 100만원 단위로 추천 됩니다. 다만, 운전자금 및 수요자원거래, 소규모 전력중개사업 분야의 경우 최소 신청금액은 1천만원입니다.
- ■에너지신산업 자금은 융자금이므로 신청 전 꼭 거래은행에 대출가능여부를 확인하세요.
- 전년도 4분기(2023년 10월) 이후에 착수(계약)된 사업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합니다.

자금지원



구분	재금	지원 세부내역	비고		
	이래 사업에 대한 보급 확대를 위한 기반 구축 및 필요시설의 설치 등 추진시 이에 수반하는 운전자금				
	사업분야	ESS (전력저장 장치)	• 배터리·압축공기 등의 에너지저장원, 전력제어장치(PCS), 배터리 및 에너지관리시스템 등 제반 운영시스템 • 주파수 조정용 ESS(전력저장장치)는 지원 제외		
		제로 에너지 빌딩	·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(예비인증)을 취득한 사업 또는 제로에너지빌딩에 준하는 건축물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인증 1++등급 이상의 인증(예비인증)을 취득한 사업으로써 3년 이내에 실시하는 사업(신축 및 개축 모두 포함)		
		발전소 온배수열 활용사업	•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촉진법 시행령 [별표1]에 따른 수열에너지를 농어업 분야, 관광단지, 산업분야 등에 활용하는 사업을 위한 기반구축 및 필요시설 설치 사업		
기타 에너지		수요자원 거래	 「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」제12조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서비스 제공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에 한함 수요자원거래시장에 참여하기 위한 실시간 사용전력량 감시기기 등 수요자원운용설비 		
에디지 신산업		소규모 전력중개 사업	 「전기사업법」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소규모 전력중개 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에 한함 소규모전력중개시장에 참여하기 위한 전력시장용 계량설비 등 소규모전력자원운용설비 		
		전기차 충전서비스	•전기차 충전이 가능한 급속충전기(충전기 용량 100kW 이상)설비 및 공사비 •「전기사업법」제7조의2에 따른 전기신사업자 중 전기 자동차충전사업자로 등록된 자에 한함		
		에너지 슈퍼 스테이션	 주유소·LPG 충전소 등 기존 시설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갖추고 친환경 차량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한 제반설비 및 운영시스템 설치하고자 하는 설비규격이 신재생에너지설비 KS인증 대상인 설비가 있을 경우 인증 받은 설비를 의무적으로 사용 		
		에너지 신기술 또는 ICT를 활용한 에너지 신산업	• 운영지침 제16조에 따른 지금추천위회에서 에너지산산업정책 연계성 등을 평가하여지원대상 여부심사 • 에너지신기술의 경우「산업기술혁신 촉진법」제15조의 2제1항에 따라 인증된 신기술에 한함 • ICT의 경우 신산업과 연계에 필요한 설비, 소프트웨어, 플랫폼 등을 말하며, 구축에 필요한 자금도 포함		